

의안번호	2209571
의 퇴 인	박홍근의원
회 답 일	2025. 7. 30.
추계번호	25B2093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0조 (재정 지원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전기 또는 수소(이하 “수소등”이라 한다)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7항) ※ 운송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전기를 충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	재량·의무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0조 (재정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운송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전기를 충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(안 제50조제7항)
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전기자동차¹⁾를 운행하기 위해 전기를 충전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－ 정부는 동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²⁾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음
 - ※ 연료 및 차량별 보조금 지급 단가는 참고자료 참조

[표 1] 동법에 따른 연료보조금 지급 차량 종류 및 연료 유형

현행법	연료유형	대상 차량 종류
제50조제5항	유류(경유, LPG)	노선버스, 일반택시, 개인택시
제50조제6항	천연가스(CNG)	노선버스, 전세버스
제50조제7항	수소	노선버스, 전세버스, 일반택시, 개인택시

자료: 국토교통부

- 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3. “전기자동차”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2) 제50조(재정 지원)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(油類)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1.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, 「지방세법」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 2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「교육세법」 제5조제1항,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
- 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1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
 2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·판매 부과금
 3. 「관세법」 제14조,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
 4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
- 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운영을 위해 충전하는 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
$$- \text{추가재정소요액} = \sum_{t=2026}^{2030} \sum_{i=1}^2 [\text{보조금 지급대수}_{it} \times \text{보조금 지원단가}_{it}]$$

- 여기서 i 는 차량의 종류를 나타냄(1=전기버스, 2=전기택시)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연료 및 차종별 보조금 지급단가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연료유형	차종별	유류세 기준	유류세 연동 보조금
경유	택시, 우등고속버스	449.79원/L	266.58원/L 현재 유류세 - '01.6월 유류세(183.21원/L)
	노선버스 (일반고속버스 포함)	교통·에너지·환경세 + 교육세 + 주행세	293.23원/L 유류세 유가보조금 + 부가세 환급액(22.42원/L)
CNG	노선버스	65.30원/L	65.30원/m ³ 관세+개별소비세+수입판매부과금+부가세
	전세버스	관세+개별소비세 + 수입판매부과금+부가세	32.65원/m ³ (관세+개별소비세+수입판매부과금+부가세)x1/2
LPG	택시, 노선버스	193.79원/L 개별소비세 + 교육세 + 판매부과금	170.40원/L 개별소비세+교육세+판매부과금-감면액
수소	노선·전세버스 택시		5,000원/kg(버스), 3,700원/kg(택시)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